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토론용 자료집

2000. 2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제12대 총여학생회, 제21대 동아리 연합회,
제30대 법과대 학생회,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법과대 성연구 모임 '동그맣게는 온쪽이',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그
리
고
는
순
서

성폭력의 개념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 바라보기

-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인권위 학내지원팀 김김보연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와 방향성

서울대 공대 새터내규제정과정과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적용사례

- 관악 여성모임 연대 임영섭

새터 때의 성폭력 사례

새터 반성폭력 내규

보론

- 1 새터 반성폭력 내규,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 2 자신의 이름을 강제적으로 명시한 사과대자보
- 3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강제력
- 4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이 고려됩니다

성폭력의 개념

우리사회뿐 아니라 대학 사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거나 가해자의 도덕적 인격 혹은 피해자 개인의 행실 차원에 국한하여 이해되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이란 정조순결 이데올로기에 갇힌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성의 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구성되어진 남성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고의 틀임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이란 결국 타자의 몸에 대한 동의없는 침해 이상도 아님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와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함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자율권(자기 몸에 대한 권리-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하고 여성 자치권 확보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 성적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운동과제인 것이다.

1. 성폭력은 연속적 개념이다

이와 같은 성폭력 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Kelly의 연속선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행위들은 각각 분리되어 사고되는 경향이 있다. 성폭력 유형안에 강간, 준강간, 강제 추행 등 서로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각각 서로 다르고 분리된 행위로 개념화된다. 이처럼 성폭력을 양분법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성폭력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지 않고 그 행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질적인 접근만을 할 뿐임을 의미한다. 사실 성폭력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정해놓고 그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양분법적인 인식은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을 배제시키고 폭력 속에 노출시키게 되며 또한 각각의 질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다. 성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이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각각이 분리되며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지어진다. 이것은 곧 성폭력이 현실에 있어서 여성의 경험이 얼마만큼 배제되어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성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 여야기되어온 때의 '객관'은 여성의 주관과 사고가 배제된 객관을 위장한 남성의 주관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에 기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모두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들은 모두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분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폭력이라는 일반적 현상의 일부로 보기 위해 '성폭력 연속선'의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개념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사이에 연결을 탐색하는 것과 대부분의 여성은 생애 중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의 경험을 하게된다는 생각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많은 다른 사건 밑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성격은 남성들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대, 강요 및 힘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의 경험을 성폭력의 범주 안에 위치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성폭력의 심각도에 대한 전술이 아니라 성폭력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형태로부터 간단하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성적 추근담과 같이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보다 강간이 더 많이 여성에게 영향을 주며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성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규정하느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것에 의해 성폭력이 평가되어야 한다. '더 또는 덜'이라는 측면은 심각도가 아닌 발생률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발생의 연속선은 가장 흔한 경험에서 가장 흔치 않은 경험으로 연결되며 경험과 상호 연결되어 적용된다. 성폭력의 연속선이란 개념은 여성이 경험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의 형태에 주의를 끌며 보다 흔한 일상적 남성행동과 극단적 성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예시해준다. 언어로 하는 강제 및 폭력과 함께 신체적 힘의 사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범위의 성폭력을 연속선 개념으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2.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사를 철저히 무시한다. 여성은 개인의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결여된 존재, 즉 동의라는 실천에 참여할 능력을 결여한 간주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은 항상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사회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어 평생동안 성폭력의 위협 속에서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여성들의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가 규범화되고 성애화된 성문화에서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있어서 동의에 대한 판단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위자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 외관상 동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성폭력이라 명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논리를 취한다. 즉 성폭력을 판단함에 있어 저항의 유무가 아닌 동의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며 여가서의 동의는 피해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남녀간의 권력이 불평등한 현 사회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 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한다

동의는 외견상 동일한 형태를 판단할 때 그것이 자발적 동의였는지의 여부의 가름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는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여기서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의 의미는 성적인 행위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 또한 의미한다. 성적인 행위란 단지 응시하는 성적인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 성적인 봉사의 요구 등의 행위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기반한 행위로서는 성별로 그 사람을 비하하는 행위,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여성비하적인 발언 등의 강요 등 또한 성별에 기반한 행위로 성폭력이다. 성폭력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기제라고 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성적인 행위와 성별에 기반한 행위는 서로 단절된 다른 경험도 아니며 많은 부분 그 구분을 지어 모호하다. 특히 성폭력의 판단 기준인 피해자의 경험에 있어서 모두가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경험이며 그것이 성폭력 경험의 연속선상에서 성폭력으로 위치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사건 바라보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위 학내지원팀 김김보연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들을 접하다보면 성폭력에 대한 조금씩 차이나는 관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들 중 가장 좁은 성폭력 개념으로,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강간이나 성기 삽입의 여부와 정도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관련 법규정의 적용과정에서 이미 드러나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같이, 이러한 성폭력의 기준과 관점은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해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문제해결을 이루어 나가는데 커다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폭력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성폭력을 피해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바라보고, 단순히 강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PC통신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를 포함시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개념의 필요성을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지원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0년대 들어서 성폭력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시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들이 많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학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이라는 실제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통념들 속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 논리를 보이고 있으며, 혹은 사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라는 주장 속에서 실제적인 피해자의 경험을 간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해결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실제적인 경험과 상처, 고통 등은 간과되고 이를 객관이라는 이름 하에서 타인들의 시각에 따라 사건의 경중과 처리를 내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폭력의 부당함을 극복하기란 힘들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문제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이를 그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너

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건의 객관적인 처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 시각과 문제해결이라는 태도가 정말 객관적인지, 객관적 태도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우리는 성폭력이 아닌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시각과 사건처리라는 태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 안고 있는 성에 대한 남성중심의 사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여타의 폭력이나 문제들에 대한 일반의 시각을 떠올렸을 때 분명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피해여성들에게 이러한 성폭력의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하고 인정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실제적인 성폭력 사건의 지원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고통과 상처의 직접적 당사자이며 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이나 단위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우선 믿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거나 자기 비난 속에서 더욱 힘들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피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우리는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일차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 것인지,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서 선택과 판단은 피해자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단위 내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해보며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단위를 통해 접수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 점차 많은 대학들에서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학칙이나 내규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게되는 경우 종종 접하게 되는 논란 중의 하나가 앞서 말한 성폭력 개념과 처벌의 경중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성희롱이라고 비취지는데 피해자가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1회 성추행인데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 학우나 가해자 측의 반응은 대략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심하다. 가혹하다 식의 반응과 또 하나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선 가해자의 인권 문제의 경우 저는 가해자의 인권도 물론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또한 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는 시각과 관련하여 저는 가해자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즉 타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행 법상의 처벌이 아니라 학칙이나 내규를 통한 처벌을 하고자 했을 경우 그것은 그리

한 학칙이나 내규의 적용을 통해 그러한 행동이 타인의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문제임을 알려내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앞서 말한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와 상처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우선 인정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당위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처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규나 학칙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가능한 처벌 방법들이 제시되고 피해자가 이들 중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처벌방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단위의 사건 지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요구안을 가지고 가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실제적인 피해 경험과 상처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리고 이를 계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에는 양쪽 모두의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당위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구안의 수위를 어떻게 조정해야할지, 낮춰야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과 협상의 과정을 단위가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 지원은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지원도 아니고 단위가 마치 하나의 서비스 기관처럼 피해자의 모든 역할과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피해자에게 무력감을 줄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더욱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신뢰에 있어서도 단위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단위가 할 수 있는 수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역할과 할 일은 무엇인지를 피해자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요구안을 가지고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조정과 협상의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데 실제적인 효과와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의 참여수위에 따라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은 이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나 학칙이나 내규를 통한 사건처리에 있어서 현행법과의 비교를 통해 학칙이나 내규의 처리과정 그리고 성폭력 개념정의의 부분을 문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학칙이나 내규가 현행법을 통한 성폭력 처리에 비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적인 강제력이 강하지는 않으나 학생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관점 속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바로 학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와 방향성

1. 대학사회 진단

11. 대학 = 성폭력 박물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여성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성 시선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한국사회로부터 대학사회가 완전히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때, 대학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동안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성역이라고 여겨왔던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계기는 93년에 발생했던 서울대 화학과 교수 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¹⁾이었다. 그 후 수많은 사건(그동안 성폭력이 아니라고 치부되어서 묻혀 있었던 사건들까지도)들이 문제제기 되었는데, 그 예로 이대 대동계에서의 고대생 난동 사건, 시립대-동덕여대 MT사건, 이대 온라인 성폭력 사건²⁾ 등이 있다.

또한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문화를 접하게 되는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에서부터 일상적으로

1) 이 사건은 흔히 '우조교 사건'이라 불리며 여론화되었던 서울대 화학과 선정휴 교수에 의한 조교 성희롱 사건을 지칭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사건이 여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해자인 선정휴보다는 피해자인 우조교의 문제로 무게가 쏠리면서 사건을 지칭하는 이름이 피해자의 이름인 '우조교'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즉, 다른 (범죄) 사건과는 달리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회적인 비난이 모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피해자는 2중, 3중의 성폭력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는 성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 특히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문제제기하기 위해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관악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98년부터 이 사건을 '선정휴 교수 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2) 98년 초에 발생한 사건으로 pc통신의 채팅방에서 이대학 한 여학우에게 음란한 쪽지를 보내고 대화방에서 나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란한 쪽지를 보낸 사건이다. 이후 가해자는 정식으로 실명으로 된 사과자보를 붙였으며, 통신회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가해자의 아이디를 회수하였다. 이 사건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어 온 온라인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루어지는 MT와 술자리, 그리고 과방에서 암암리에 언어적인 성폭력부터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성폭력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갖가지 성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바로 대학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성폭력들은 '친밀감의 표현인데 왜 그러냐', '사소한 것까지 왜 괜히 트집잡느냐'라는 등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문화에 의한 암묵적 강제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온갖 비난의 시선이 집중되어 십사리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경험을 공개할 수 없게 만드는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개개인들에게 은밀히 회자될 뿐,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새터라는 공간은 다양한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인데 남자선배들이 여자 새내기들을 '술 따르는 여자' 정도로 취급하는 등의 언어적 성폭력에서부터 조별 촌극이나 '첫날밤에' 게임, 혹은 '젖소부인 엘리제'와 같은 마임으로 여성들을 배제하는 집단적 성폭력, 그리고 강제키스나 강제추행과 같은 물리적인 성폭력까지 그 종류는 다양하다. 또한 새터 기간에는 성폭력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대도 쉽게 문제제기할 수 없는 집단적 성폭력이 주를 이룬다는 점 외에도 새터라는 공간이 새내기에게 가지는 의미를 감안할 때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새터 내규 (en) 개정안* *한국연세대 성폭력 예방과-1*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새터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수련회를 모두 포함하는 새터는 새내기들이 처음으로 대학문화를 접하는 공간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대학 내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새터에서 새내기 여성들에게 남자선배들이 행하는 성폭력이나 과나 반, 혹은 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적 성폭력 혹은 집단적 성폭력을 새내기 여성들이 처음 접할 때 선배들 간의 권력관계로 인해, 그리고 선배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는 진보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력'이라고 느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십사리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다.

12. 대학 내에서 진행되었던 반성폭력 운동

이렇게 대학 내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건별 대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별 대처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면서 *총여학생회나 여성위원회와 같은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과 자치규약제정운동으로 실물화되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처음으로 제기한 단위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라는 대학 간 연대체이다. 그동안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하여 학내의 여성운동단위들은 그 사안들에 대하여 물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중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각 학교 내에서 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나마 학내 여성운동단위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교 구성원들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해결이 어려웠으며, 사건을 해결한다고 해도 *사건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들은 성폭력의

사안별 해결을 넘어서 근본적인 공동체의 성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96년 18개 학교의 여성운동단위가 모여서 만든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이다. 여성연대회의에서는 학내 구성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만이 아닌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담보할 수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학칙제정운동을 제안했다. 현재는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아주대에서 학칙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학칙의 내용을 가지고 학교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제정운동은 학칙제정운동과 더불어서 각 대학 내에서(특히 단대나 과등 소규모의 단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치규약제정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왔는데 크게 연세대 사회대 여성모임 'Beyond'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강제력을 띄지 않는 형태의 자치규약제정운동과 서울대 사회대, 서울대 인문대 고려대 략대 등에서 이루어졌던 학생대표자들의 인준을 거치거나 총투표의 방식을 통해 강제력을 띄는 자치규약으로서의 학생회칙 제정운동의 두가지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자치규약제정운동은 점점 더 학생들의 자치권이 축소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 사회에서 대학 내에 만연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 그리고 성가중심적 성문화에 대해 학생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바꾸어 내려는 운동이다. 특히 학칙제정운동이 학내의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될 때 화석화된 또 하나의 권력과 강제적인 규율을 생산한다거나 학교 측과의 협상 단계에서 학칙제정 운동 본래의 의미를 탈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학칙제정운동과 자치규약제정운동은 결코 따로 떨어져서 사고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칙제정운동의 과정 속에서도 대학의 운영이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학자치 실현의 한 과정으로 그 의미성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학칙제정운동을 통해 대학의 비민주적인 구조와 반여성적인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함과 동시에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 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 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을 현실화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은 성균관대와 서울대 공대에서 진행된 바 있다. 성균관대에서는 새터때 발생했던 성폭력이 끊임없이 총여학생회나 단대 학생회로 신고되었었고(아래 사례 참조), 신고된 사건들이 공론화되면서 새터때의 성폭력적 문화에 문제제기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잣대가 되어 줄 내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성균관대 새터 성폭력 사례

■ 97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성기모양을 만들고 여학생이 가운데 앉자 암바사를 뽐으면서 사정하는 것을 훑내내었다. 그 상황에 있던 울전 캠퍼스의 한 학우가 불쾌하다는 표시를 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하여 여학생의 반발을 무시했다.

■ 새터에서 방 이름을 정할 때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바다', '뽕 따는 처녀'-따왔다 뽕, 먹어왔나 뽕, 누가왔나 뽕, 나 오늘 뽕 따다, 뽕따다

욕했다, 씨팔 드디어 등, '비가조'-니 조때로 생각해, '매직스'-여자는 한달에 한번 미법에 걸린다, '百水落下'-성기를 그려놓고 사정하는 모습을 표현할, 이 외에도 여러 개의 예가 존재한다.

■ 97년 새터에서 실무단 여학생이 공지사항을 전하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다'를 연호하며 '웃 벗어'라고 집단적으로 말했다.

■ 97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서 잘 때 문을 열고 그 여학우를 강간하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총여학생회에 신고가 들어왔으며 단대와 총여가 공동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사건에 대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98년 겨울방학때부터 총여학생회에 의해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 진행되었고 99년 방학때 학대운영위원회에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인준되면서 99년 새터부터 효력을 가지기 시작했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이 가지는 의미
 21.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과 자치규약제정운동과 마찬가지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2.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이 가지는 의미

21.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 형성과 세력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과 자치규약제정운동과 마찬가지로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은 단순히 처벌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성억압과 불평등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과 해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드러난다.

첫째, 성폭력은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 보다는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어 왔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이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포착하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족이나 가문 등의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여성의 성은 역사적으로 남성지배권력과 자본주의의 사회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기반으로 하는 결혼과 가족제도에 더욱 억압되면서 남성의 상속권과 가문의 계승을 위한 생식의 성이 강조되고 혈통의 순수성은 더욱 중요하게 되어 여성의 순결과 정결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구조 속에서 남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성담론 체계에서 성폭력의 피해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소유하는 정조이자 순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담론의 위력은 실질적으로든 허구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든 대학 사회에도 빈번히 발견된다. 대부분 정작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순결을 잃었다거나 해본 여자라는 비난을 들을 것이 두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묻어버리고 만다. 정조의 문제로 사고되는 성폭력의 담론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사고해보면 대학 사회가 그러한 담론으로부터 결코 유리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개는 원래 해본 애였다는 등, 여자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길래 그러냐는 등의 언설들을 굳이 예로 들지 않아도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정작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피해자만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해 왔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성폭력의 행위들이 각기 분리된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할 때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시킨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적 괴롭힘으로 개념화하여 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현행법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구분짓는 기준은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여성의 성기 안에 남성 성기 이외의 다른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는 강간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 체계 안에서는 피해자의 심신 손상이나 폭력에 대한 경험의 여부는 성폭력을 파악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을 배제시키고 폭력 속에 노출시키게 되며 또한 각각의 질적인 구분을 시도하여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다. 성폭력의 양분법적이고 질적인 접근은 성기중심적인 성담론을 그 기반으로 한다. 성폭력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사회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폭력의 경험은 여성에게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 걸친 행동들의 연속적 총체이다. 실제로 성폭력은 여성이 경험하는 넓은 범위의 학대와 폭력이며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각기 분리되며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지어진다. 이러한 분리는 강간과 같은 특정 형태의 극단적인 양태들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집중시키게 되며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그녀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더 심각한, 혹은 덜 심각한이라는 질적인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셋째, 성폭력의 담론 속에서 피해자 여성의 언어나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간의 피해자임을 판별하는 기준은 '동의'의 여부-그러한 폭력 행위에 동의를 하였는가 아닌가가 아닌 '저항'의 유무-그러한 폭력 행위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저항'을 했는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제도적 인식은 실제로 표명된 여성의 거부의를 철저히 무시한다. 여성의 'no'는 언제나 'yes'로 간주되며, 여성의 동의 혹은 비동意的은 언제나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의 지배담론을 해체하는 과정과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 재구성의 과정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된다. 즉, 여성적 관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담론 재구성 속에서 여성권의 하나인 여성의 성적자율권 확보의 의미성으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여성적 입장의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운동이며 투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2. 시안별, 수공업적 해결을 넘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물적 구축

연세에서 기간에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의 과정은 특별한 책임단위의 부재와 주로 성폭력 사건의 신고가 들어오는 과·반 학생회, 단대 학생회, 총여학생회, 총학생회의 성폭력 사건 해결의 교양과 준비 부족, 그리고 물질적 장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아마추어적인 대처를 그대로 드러내어 왔다. 이러한 책임단위와 물질적 장치의 부재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대한 노후가 쌓이지 못하고 단절되면서 또다른 성폭

력 사건이 발생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은 결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단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목적은 새터에서 집중되어 드러나는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제까지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경험과 언어로 새로운 성문화를 구성하는 측면에 있다. 남성중심적이고 성기중심적인 성담론을 해체하고 여성적 관점에서 성담론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의 실물적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은 연세에서 그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이다.

23. 대학 사회 자치 실현 과정으로서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은 대중적 논의에 기반한 공동체내의 자치규약의 제정과 공동체 문화의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자치운동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 사회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 속에서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학 공동체 그 자체였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임과 동시에 학생 사회 스스로의 몫이다. 특히 새터는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처음으로 접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학생 스스로가 학생 사회 내부의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자치운동으로서의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의 의미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3.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에 있어서의 원칙

31. 제정의 과정은 연세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연세 학생사회의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동의와 대중적 논의의 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는 제정된 이후 절대 고정되거나 화석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 과정 및 공유의 과정에서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제정된 이후에도 논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의 용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32. 성폭력 담론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우리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이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의 담론화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의 과정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이제까지의 성폭력 담론에서 소외되었고, 언제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여성의 관점과 경험이어야 한다. 대학 내에서 성폭력은 많이 알려지고 있으며, 성폭력에 범죄라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공론화 되었을 때,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지리하고 괴로운 싸움을 겪어야 한다. 현실에서 성폭력 사건은 제기되는 순간부터 그것의 정당한 해결보다는 이 행위가 과연 성폭력인가에 대한 논쟁에 먼저 부딪히게 된다. '사랑하니까', '그녀도 원했다고 생각되어서', '분위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었고' 등등의 성폭력 사건에 항상 붙는 꼬리표들은 항상 성폭력을 은폐시키고 정당화해 왔다. 여기에서 니옌한 여러 수식어들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들이며 각각이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와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생물학주의적 남성의 성욕이 여성의 그것에 비해 강하다는 속설, 데이트 강간 및 성폭력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편견, 여성의 'no'는 'yes'라는 오해, 부정적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 성에 대한 지독한 무지함 등등.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겪은 고통을 사강되어 버리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인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결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새터 반성폭력 내규 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언어를 여성의 언어로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제 문제점 있고!

서울대 공대 새터내규제정과정과 제정 이후의 실질적인 사례

관악 여성모임 연대 임영섭

1. 새터내규가 있기까지

새터 성폭력 내규(이하 내규)를 제정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전의 새터가 얼마나 성폭력적이며 성차별적이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95년의 경우 열전새터에서는 '막걸리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빨대로 막걸리를 옮겨서 막걸리를 재구성한 후 남는 막걸리를 마셔야 하는 게임이었다. (막걸린지 침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학우가 마시면 점수를 두 배로 주었다는 점이다. 이 게임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게임들이 여학우가 참가하면 점수를 배로 주거나, 아니면 여학우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달걀게임 등이었다. 이런 게임으로 구성된 열전새터는 그야말로 성차별의 집합체였다. 또한 여학생들도 같이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다는 보가 드문 장점(?)을 이용하여 새터에서는 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성폭력이 발생했다. 96년까지 공공연히 음란가요가 불리워졌고, 여학우와 술을 바꿔 마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언어적, 비언어적 성폭력들이 난무했다. 그 외에도 공대에 여학생들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의미랍시고, 마치 여학우를 반겨주는 호의인 양 진행되는 '자신발기'는 여학우가 30% 이상 합격한 과에서도 남아있는 실정이었다.

새터의 성역압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음란가요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97년 새터에서 당시 공대여성위원회(이하 여위, 현재 FinE)가 음란가요를 집중 공격했다. 음란가요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아예 가사까지 모두 공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성을 왜곡하고 있는 성폭력적 가사인지를 자바로 알려냈다. 이로 인해 97년도에는 공공연히 음란가요를 부르는 횟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

다음해인 98년 새터 준비 당시 공대 운영위원회에서 한 운영원이 새터에서 <성폭력 내규>를 제정하자는 안을 제안했고, 여위(현 FinE)에 내규 안을 작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당시에는 성폭력 학칙에 대한 학내에서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96년도부터 공대에서 성폭력에 관한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상황이라 별다른 이의 없이 내규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를 썩 내키지 않는 과 학생회장들도 있었지만, '성폭력'라는 글자가 가지는 악명 때문인지 제정 추진과정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대강의 안을 '성폭력 학칙안'에 기초해서 작성한 후에 운영위원회에 올렸더니, 역시나 큰 반발이 있었

다. 내규 자체에 대해서는 차마 반대할 수 없었던 과학생회장들이 내규 조항 하나하나에 판지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자 지고 제대로 논 수가 없겠냐는 등,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너무 애매하다는 등,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다. 여학우에게 노래를 시켜놓고 '괴상'을 지르는 것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니 그럼 여학생이 나왔을 때 박수 좀더 크게 치는 것도 성폭력이나부터 시작해서 자기네 과는 남학생한테도 괴상을 지른다는 등,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터 내규에 시비를 걸고자 하였다. 반면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테이블을 좀더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과학생회장들도 있었다. 판지를 하나하나 소화하며 몇 번의 논의에 걸친 수정 작업 끝에 드디어, 98년 공대 새터 성폭력 내규가 만들어졌다.

2. 내규 제정의 영향력과 의의

98년, 99년에 걸친 내규의 힘 덕택에 많은 분위기 쇄신이 있었다. 음란가요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어졌고, 음란가요를 부르려 하자, 과장이 제지를 한 과도 있는 등 옛부터 내려오던 음란 가요의 계승 전통도 많이 사라졌다 (물론 음성적으로는 아직도 훌륭히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그 의의를 보자면, 우선 내규는 새터에서 새내기들이 전통적으로 물려받던 성차별적 문화의 흐름을 상당수 끊어낼 수 있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새내기들이 대학문화를 거의 처음 접하게 되는 새터에서, 선배들을 통해 물려받는 놀이 문화는 그들의 대학 생활에 큰 지점이 되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새터가 보여주었던 성차별적, 성폭력적인 모습들은 여과 없이 새내기들에게 흡수되었으며, 이는 대학문화 전반을 성차별적, 성폭력적으로 만드는데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내규의 존재는 이런 잘못된 첫단추를 끼우는 일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내규는 성폭력적 행위를 제지하려고 해도 학반외에는 제지할 근거가 없었던 새터의 문화에 판지를 걸 수 있는 큰 구실을 제공하였다. 성폭력적, 성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오빠, 그거 성폭력이에요" "아아, 그런 거 하면 내규 때문에 잡혀간대" 라는 식으로 웃음 반 불만 반의 자체 규제 움직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내규는 성폭력의 개념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가해자들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일들도 피해자에게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낼 수 있었다. 이는 반성폭력의 운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의 개념을 강간(기껏해야 성추행)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성폭력인지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가해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규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고,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내규는 단지 새터 중의 규약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내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고, 이는 학기 중 성폭력 학생회칙 제정 운동과 연결되어 성폭력 학생회칙을 뒷받침하는 큰 계재대가 되었다.

3. 적용, 해결 사례

98년

① 재료공학부

98학번 한 학우가 음란 가요를 부르려다가 과장에게 제지당했다.

② 기계C

98학번이 음담패설을 하려 하다가 제지당했다.

③ 지환시C

96학번이 반 학우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란가요를 부르는 일이 발생했다.

→ 논의 테이블이 꾸러졌구요. 음란가요를 부른 96학번 학우가 과방에 사과자보를 붙이고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④ 조선해양

98학번이 새터 첫째 날 버스 안에서 음란가요를 불렀다. 이 사실을 숨기려는 인물들의 활약이 있었으나 정보가 새서 뒤늦게나마 알려졌다.

→ 역시 논의 테이블이 꾸러졌구요. 음란가요를 부른 98학번이 내규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새내기였음을 감안하여 과학생회장이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과자보에는 '은폐'에 대한 사과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구요.

⑤ 산공과, 응용C

여학우만 올라가서 지신발기를 함.

→ 지신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여학생만 차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이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남학생이 올라갈 수도 있다면 지신발기를 해도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9년

① 전기C

새터가는 버스 안에서 99학우가 소를 한다면 웃웃을 모두 벗어 제끼는 사건이 발생했음. 선배들이 그 후배를 가리면서 이를 제지했고, 버스 안에 있던 부학생회장이 그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했다.

→ 첫째날 밤 방별로 논의가 있었고, 둘째날 특위 테이블이 꾸러져 이야기한 결과 새내기인데다 공대 자료집을 받지 못해 새터 내규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대가 아닌

벤치에서만 공론화하고 C반 학생회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에 자보를 붙일 경우 밤에 다른 과들이 보면서 다 보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보 작업은 취소되었구요. 대신 셋째날 아침에 전기C반이 다 모인 상황에서 과장이 구두로 발언을 했습니다.

② 지현시B

지현시B에 별명이 '아쌔마'인데 '아! 색마'로 불리우게 된 새내기가 있었다. 첫째날 밤 지현시C와 A를 돌았는데, 같이 간 친구들이 색마라는 구호를 계속 외쳤구, 그 이전에 입학식 때에도 B반 학우들이 계속해서 색마라고 외쳤다고 함.

-> 공대 전체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 결과 공론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현시C에 대해서는 B반이 와서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하고, A반에게는 38동에 사과자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③ 문화제 새내기 발언 사건

발언하러 나온 한 남학우가 한 여학우에게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 다행히 그 여학우가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1400이나 되는 인원 가운데서 엄청나게 무안해질 뻔했음. 다행히 밤중에 단체로 와서 그 여학우를 찾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상대방 여성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남자의 프로포즈가 멋있고 근사한 것으로 조장되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사건 총화자료로 이용했습니다.

④ 건축과 지신발기

문화제가 끝난 후 건축과에서 지신발기를 해도 되는지 여부를 특위에 물어왔으며, 건축 과장이 남녀 구분 없이 자원지만 올리고 여학우들도 깔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 자원자를 받았고, 아래 발하는 여학우도 있었으나, 위로 올라간 남학우는 없었다고 하네요.

⑤ 세터가 끝나고

세터 가기 전 준비과정 등을 포함해서 세터 성폭력 사건을 총화해서 자보화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성폭력이 되는가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글들도 역시 들어갔구요.

4 Q & A

(이하 내용은 98년 관악 인문대에서 있었던 김진희씨와 총학 성정치 위원회의 논쟁 글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Q: 자료집에 실린 내용이나 토론 내용들이 너무 노골적이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A: 그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을 당한 피해자들이 재생산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부끄럽다고 숨기고만 있어서는 같은 일들의 반복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로 비디오는 좋은 것, 성폭력 사건은 민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조?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은밀하게는 성에 대한 것들을 파삭하게 알면서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이중 가치관을 깨뜨리는 데에는 최근 구성에 씨가 대단히 큰 공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Q: 내규 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을 방지한다는 일 자체가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A: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규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내규는 성폭력을 저지른 학우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발생과 해결 과정에서 왜 이 사건이 성폭력인지를 알리고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Q: 세터는 새내기들과 현내기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동지애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 끈끈한 관계를 이뤄야 할 세터에서 내규로 인해 남/녀가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A: 끈끈한 관계를 이루어야 할 세터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그 이상 서먹한 관계는 없겠네요. 그것은 소수의 경우라고요? 다수의 끈끈한 관계유지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는 뜻은 아니겠지요?

실제로 내규에 실린 내용은 그렇게 굉장한 제약이 아닙니다. 음란가요를 부르고 성에 대한 농담을 해야 끈끈한 동지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Q: 세터에서의 성폭력이 오히려 더 공개되어 모방범죄가 나오지 않을까요?

A: 자신의 선배, 동기, 후배들을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제대로 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 성폭력 모방범죄를 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한가지 뿐입니다.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Q: 그렇게 일상 생활 하나하나가 다 성폭력이라고 포투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삼니까? 길가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거나 밀려서 넘어지다가 우연히 가슴을 만지도 다 성폭력이겠요?

A: 복잡한 버스나 전철 안에서 몸이 접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여자의 몸에 밀착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데이트 신청을 해서 거절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싫다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며 추근거리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술자리에서 마주앉은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한 예의지만 "여자가 따르는 술맛이 더 달다"는 식으로 여자동료를 술시중꾼 취급하는 행위는 당연히

성폭력입니다. 넘어가면서 우연히 가슴을 짚었다면 상대방 여성에게 사과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면 되겠죠.

Q: 성폭력 사실이 없었는데 여성이 사건을 날조 조작하여 어떤 사람을 가해자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성폭력 범죄는 다른 여타의 범죄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밀히 일어난다는 것과 증인이 거의 없다는 것, 강간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유일한 증인은 피해자이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미국에서는 금전을 건넬하기 위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주장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신교수 사건에서, 우조교에게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던 2심 판사는 이 예를 인용하면서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릴 경우 일부 여성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신교수에게 배상판결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실정을 너무나 무시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죄인이 되고 정숙하지 못한 여자, 어디서 굴러먹은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감히 누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하겠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조교가 대학 내에서 비밀비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폭력을 알림으로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는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신교수는 아직도 명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당하지도 않은 성폭력을 조작해 누군가를 음해하려고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2, 제3의 성폭력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도 현실이 안되는 분들을 위해 몇 마디 첨부하겠습니다. 논의 테이블은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양쪽의 진술을 듣고 상황을 정리한 후 양쪽의 합의를 보아 결론을 내립니다.

Q: 가해자도 결국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나요?

A: 물론 아주 넓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전두환도 낙후된 정치구조의 피해자이고, 김영삼도 후진적인 경제 시스템의 피해자고 일본도 제국주의 만연의 피해자가 됩니다. 현실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원칙적인 훌륭한 말이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지요.

Q: 그렇다고 설명공개사과자보라니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해자가 설명 공개사과자보를 썼다고 해서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성폭력범=강간범으로 치부해버리는 인식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음란가요를 불러서 사과 자보를 썼다고 합시다. 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합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일에 설명사과자보는 심하다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폭력범으로서 사과자보를 쓰는 것은 강간정도는 저질러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만이 저지르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발상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일어나는 일이지요 (강간범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내규는 강제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가 도망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일단 당연히 자치 규약은 강제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휴학하고 군대를 가버리면 군대를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단, 가해자가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평계를 대면서 도망칠 때, 혹은 재범 이상의 상습범일 경우는 의도적인 성폭행임이 확실시되므로 가해자를 대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경 조항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충분히 동의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공개할 수 없다면 학생회에서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대자보만 붙이고, 실질적인 공개는 학교 밖에서 하는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가해자의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법처리하는 수도 있겠지요.

Q: 내규를 제정하는 자체만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A: 내규 자체만으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인력상의 문제로 각과를 모두 관리할 수 가 없었기에 98년에는 모니터링, 신고함 제도를 내규와 함께 시행했고, 99년에는 공대 성정치국의 특별 위원회들이 모니터링을 담당했었습니다. 각과에서 한 명 이상의 모니터링 담당자를 내정하였었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들은 새터에 앞서 성폭력에 대한 교양을 공부했구요, 새터에 가서는 매일 밤 일정시간에 모여 그날 각과에서 있었던 일들을 총화하고 논의 테이블을 꾸려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었습니다. 효과는... 컸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내규를 제정해도 학우들에게, 특히 대학문화에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까요?

A: 쉽게 알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내규를 모른 상태에서 새터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새터 이전부터 운위원, 과장, 과책임들에게 통보문을 보내어 내규에 대해 알린 후, 운위원 교양, 과책임 교양, 모니터링 담당자 교양을 시행하여 과의 책임자들이 내규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도

와야했습니다. 그리고 밋안되는 운동원들이 새터당시 새내기들을 모두 커버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과책입자들에게 새내기들에게도 내규를 충분히 알리고, 새내기들이 분위기에 끌려 오버하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편 새터 출발 직전 단대 학우 전체가 모여있는 장소를 통해 공개 교양을 할 수 있다면 전체 교양을 하는 것도 매우 좋겠지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적당치 않아 첫째 날 밤 문화제 시작하기 전의 판을 얻어 내규에 대해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새터 안에서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99년 공대 새터에서는 새터 자료집에 내규를 실는 것은 당연 아예 숙소 방마다 내규를 벽에 붙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도 내규를 미처 몰라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매년 잔재하고 있군요.

Q: 성폭력 사건을 숨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A: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도 자신이 과에서 매장당할까봐 겁나서 신고를 못하는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는 대동단결의 의식이 비정상적으로 증폭, 왜곡되는 새터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신의 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학우를 압박하는 것은, 두번의 폭력을 가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같은 의미도 포함하여 모니터링과 신고함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눈에 띄는 효과는 모르겠지만 '모니터링'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주는 영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여겨지는군요. 신고함은 부담없이 접근 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기존에는 복도 끝에 설치했었습니다. 이번 00년 새터, 관악 공대에서 화장실에 설치할 예정.) 그리고 내규에 따로 명시하여 은폐시 은폐에 대한 사과자료를 따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새터 때의 성폭력 사례

신입생 수련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비밀비재하나 신입생들이 성폭력이라고 느끼기 힘들다는 새터의 상황과 이제까지 접수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음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수집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1 : 97년 신입생 수련회였다. 조별로 각자의 방에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였다. 그러다가 가벼운 성적인 농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런데 한 남학생이 재수 시절 청량리 588에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던 것이었다. "나는 이는 형을 따라 어떤 방에 들어가서는 야한 비디오를 하나 보다가 형이 여자를 하나 시키길래 나도 졸라서 하나 신청하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기대랑은 달리 예쁘고 잘빠진 여자가 아니라 다 늙어가지고 맛이 간 여자가 들어와서 옷을 벗는 것이야. 보니까 배도 늙어지고 그러데. 그래서 뒤에서 잡는 것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 20명 가까운 학생들 중 여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그 전의 그저 야한 이야기와는 달리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고 그는 사과를 않고 이해할 수 없어 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그는 선배들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한다며 옷통을 벗고 정력가를 불렀다.

사례 2 : 98년 모단대 수련회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97학번 한 여학생이 다른 조에 가서 술을 얻어오게 되었다. 술을 얻으러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후배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스트립쇼를 해라, 그러면 술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례 3 : 98년 새터시 모 단대에서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일을 겪은 여학생은 자다가 깨서 굉장히 당황했으나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옆 방으로 옮겨서 잤다.

사례 4 : 99년 새터 장기자랑 때 조별 존극에서 남학우가 여장을 하고 다른 남학우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례 5 : 96년 모단대에서 D전자 광고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짜고 앞에 있는 남학생 한 명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연구원 복장을 한 여학우가 남학생이 들고 있던 암바사 병을 탁탁 치면서 멘트를 말하자 남학생이 암바사를 뿌리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사례 6 : 99년 모단대 수련회에 중앙동아리 중 하나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새터행사 중 이 동아리에 속해 있는 남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평가글을 그 동아리 게시판에 올렸다. 이를 안 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단대에 속한 남학우가 사과하고 관련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였다.

사례 7 : 98년 새터시 모 단대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불을 끈 채 '오펙 너무 힘들어', '오펙 너무 길어' 등의 대사와 헛헛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며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대사를 주고받은 후 불이 켜지자, 단대까지의 거리가 먼 것에 대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8 : 99년 조별 술자리에서 어떤 조 남학생 5명이 술을 얻으러 다른 조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체조 노래를 개사하여 성기를 지칭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같이 있던 여학우가 불편을 제기했으나 '재미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무시되었다.

사례 9 : 99년 새터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옹하고 술을 따르자 '잘 따르네. 술집에서 일했나보지?'라고 말하였다.

사례 10 : 99년 새터 때 모 단대에서 술자리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 구성원들 중 선배들이 여학생과 남학생을 임의로 지정해 입맞춤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밤에서는 술자리에서 입맞춤을 강요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사례 11 : 98년 새터시 모 단대에서 장기자랑 시간에 아카라카 섹시버전이라며 사정하는 장면을 흉내내고, 남성의 정력을 상징하는 행동을 취했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 이 내규의 적용 시기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0.7기간부터 각 단대의 신입생 수련회가 모두 끝날때까지로 한다.

1. 목적

새터는 신입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학 문화이며, 이를 통해 대학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새터임에도, 여학우는 물론이고 남학우들도 음란 가요 등으로 대변되는 집단적 성폭력과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무방비한 채로 노출되었다. 진보적인 공간이라 여겨지는 대학에서의 이러한 성문화는 신입생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방법들은 소극적이고 미비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비판, 근절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서 내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내규는 결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한 보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나 단죄를 넘어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공동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학생회 첫 사업인 새터에서 바람직한 대학문화를 보여주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 교양이나 내규의 여론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성의식(혹은 성문화)을 지적해내고 올바른 성문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 및 요구, 그리고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행위를 뜻한다.

1)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 대 집단인 경우, 혹은 집단 대 개인의 경우

① 집단적으로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언어폭력)을 하거나, 성행위, 성기들을 흉내내는 경우

예1) 조별로 촌극이나 장기자랑을 할 때

-96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남학생들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랩을 짠 후, 맨 앞의 남학생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여학생이 암바사를 탁탁치며 그 당시 유행하던 광고 멘트를 말하자, 앞의 남학생은 암바사를 내놓으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99년 새터에서 모 단대의 조별 촌극 시간에 '학교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남자가 불을 꺼놓고 '오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등의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과 신음소리로 표현했다.

예2) 98년도 응원 오리엔테이션 때 아카라가 응원단 중 여학우가 빨간 옷을 입고 있자, 고대를 상징한다며, '벗어라'라고 외침.

② 새터행사에서 사회자가 어느 한 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③ 공동의 공간에서 음란물, 사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예) 새터에서 방이름을 정하고 그 게시물을 꾸밀 때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술을 마실 때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적대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예) 억지로 술을 먹이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경우. 또는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한 성을 임의로 배제시키려는 경우

⑤ 소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행위를 몸짓 혹은 소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예) '첫날 밤에' 등의 게임

⑥ 음란 가요를 부르는 경우

예) 정력가, 젖소부인 엘리제

2)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가까이에서 앉게 하여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

② 신체적인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를 고의적으로 접촉

-원치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 (입맞춤, 포옹)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는 행위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을 하는 경우

-기타 접촉, 성관계를 강요하는 일체의 물리적 혹은 신체적 행위

예) 98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우가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③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성적 활동, 성감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행위

-성적으로 모욕하는 호칭의 사용

-불쾌한 성적 농담(농담의 내용이 왜곡된 성의식을 담고 있거나, 강간 등을 주제로 하는 농담)

-기타 상대방이 모멸감을 느끼거나 인격의 손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잠재된 언사

④ 적대적 환경 조성

-음란하고 징그러운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음란한 쪽지, 편지를 보내는 행위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낄 상황을 조성

예) 벽으로 몰아붙여 팔에 가둔다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

-화장실을 엿보거나 침입,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놓는 경우

3. 의무

새터에 참여한 구성원은 새터 때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대상

새터에 참가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5. 신고와 신고기구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 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신고함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의지와 그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신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사건의 신고는 직접방문, 전화, 서면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신고기간은 새터 기간만이 아니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심신의 후유증을 받고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으로 시효 규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피해자의 보호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고 범죄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또 다른 범주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기타 피해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7. 동조자의 처벌

성폭력 대책위는 성폭력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할 때에는 그 동조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단, 이때의 동조자는 새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다.

8.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 각급 학생회는 과(반)내에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2) 신고함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총여에 제보가 들어오면 총여학생회가 제보자가 되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 논의 테이블을 제안해야 한다.
- 3) 내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폭력 사건을 사건 대책위원회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오지 않는다.

9.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1) 새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단대 학생회(단대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과반 학생회(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1인) 혹은 동아리 대표자, 총여학생회(총여를 대표하는 1인), 총학생회(총학을 대표하는 1인)가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이후 바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속이 다를 경우 쌍방의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각각의 1인(가해자 소속, 피해자 소속)이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온다. 또, 과반 학생회가 없을 경우 단대 1인 혹은 동아리 연합회 1인만 들어온다 (최소 3인-최대 6인).

2)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를 둘 수 있다. 집행부의 구성은 성폭력 사

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집행부는 대책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가해자 및 동조자의 처벌을 강제해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와 동조자의 징계 및 재교육
-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
-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치 않을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성폭력 사건 대책위 위원 중 사건을 누설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 위원직을 박탈한다.

6) 집단적 혹은 개인적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

①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논의 테이블로 가져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② 공식적인 실명사과(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혹은 전체를 대상으로)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과반장, 단대장의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시키려 한 경우 그에 대한 사과 대자보를 붙여야 한다.

③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④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처벌을 가해자 및 동조자에게 가한다.

10. 징계내용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에서 내린다. 가해자 및 동조자에 대한 징계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가해자 및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피해자 대한 사과,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 성폭력이나 성관련 프로그램을 듣는 재교육
- 성폭력 상담소 등의 외부단체에서 일정기간 봉사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정기간 가해자 접근 금지

11. 개정

개정안건 상정과 의결은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 위 새터 내규는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제정,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1. 들어가며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것은 단대들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이름으로 연세 전체에 적용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대간부수련회때 열린 중정회에서 제기된 문제들 중 하나인 '내규제정이 너무 이르지 않는가?'라는 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단대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남녀학생의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연세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내규제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이다.

2. 틈새를 내자!

새터의 역할은 저번 확대간부수련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성폭력이 난무하는 대학, 특히나 새터에게 친밀감을 쌓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폭력은 묵시적으로 공인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귀가 닳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또한 이는 모두가 공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도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서도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열렬히 후배를 반기느라 그랬다면, 대학 사회에서는 용서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태껏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시도조차 없었다. 이에 우리는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새는 고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은 묻혀있던 잘못들을 고집내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성폭력 내규의 의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대인 경우 차라리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

려이다. 이는 옳은 말이다. 그러나 반성폭력 내규제정을 연기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어떠한 관심 없이 무작정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논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논쟁을 일으키는 역할을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규제정은 내규제정으로만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규제정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촉발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킴으로써 연세 내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의 의도이다.

3. 바로 지금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은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르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생각들이 더욱더 굳어지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그 기회이다.



보통 자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명시한 사과 대자보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가해자로부터 공식적인 설명 사과를 받아내야 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이론에 설명사과자보를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설명사과자보는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경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해자의 동의를 거쳐 채택하게 된다. 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존중되어야 함은 1차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가해자의 이름을 명기하여 공개하는 설명사과자보에 대해 '가해자의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해자의 설명이 널리 알려질 경우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구조적인 범죄이다. 달리 말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비일비재한 성폭력은 그 범죄가 발생한 대학 공동체의 성문화에 내재한 많은 문제점들이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형태를 띠고 드러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성폭력의 사회성을 간과하게 될 때 성폭력은 단순히 '부도덕한 개인인 가해자와 거기에 재수없게 걸려든 피해자'의 문제로 환원된다. 물론 성폭력의 사회성이라는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역시 사회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는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범죄의 체현자로서의 죄과가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 가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듯 성폭력은 사회구조적 범죄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사회 구조적 범죄이므로 이는 잠재적으로 여성 전반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 가해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설명사과자보라는 형식을 빌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폭력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을 생산하는 모순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성폭력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 차원의 처벌이상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설명사과자보는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설명사과자보는 단순히 가해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복성 처벌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성폭력에 대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문제제기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장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이 사회적인 범죄임을 인식할 때 그 해결과 예방도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가해자를 재교육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이 때 설명사과

자보는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을 상기시켜주고 사회 구성원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성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나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내 현실에서 설명사과자보를 통해 드러난 사례는 사회구성원 전체에 큰 과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과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회 구성원이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면 이는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진 책임-가해자를 다시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되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가해자가 설명사과자보를 쓰기로 합의한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최소한의 표시이다.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이는 가해자의 사과가 진실하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한 연후에 사과자보를 썼다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설명사과자보를 공개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설명사과자보를 일괄적으로 중도 앞이나 학관 앞 등에 널리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공개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개범위를 결정할 때 우선 가해자가 개인이나 집단이냐에 따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는 단과대 건물이나 중도 등 비교적 큰 단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집단적 성폭력의 경우에는 집단 명의(예를들면 과/반 학생회 명의)를 내건 사과자보가 가장 적절한 징계수단이자 해결방안이므로 널리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가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공개범위를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를 먼저 제정한 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다도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는 정상참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신입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좀더 신중한 고려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개인인 경우, 특별히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사과자보를 과방 같은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물론 개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재범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큰 단위에서 공개할 필요도 있다. 한편, 설명사과자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별도로 모든 사건의 경위와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간단한 기록은 중도나 학관 앞 등에 널리 공개하기로 한다. 이것은 사례의 축적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 등은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덧붙여 설명사과자보라는 형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에 채택되는 것으로, 가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 대책위의 판단으로는 성폭력 사건임이 명백하나 가해자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가해자의 동의 없이 사건을 공개해 버릴 수가 있다. 다른 학교의 예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가해자가 순순히 시인을 하여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동의 없는 사건 공개'가 언제나 가해자의 시인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며 자칫하면 원치 않는 상황(예를 들면 가해자가 성폭력 대책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이 발생하여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성폭력의 사회적·공동체적 차원의 해결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선불리 채택되어서는 안되겠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강제력

학생사회 내에서 정한 새터 내규의 강제력이 국가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강제력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터 반성폭력 내규를 어떻게 각 학생들에게 강제해내고 가해자의 징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그래서 새터 내규는 '자치'의 차원이 더욱 강화된다. 넓게 본다면 반성폭력 내규를 제정하는 것은 학생사회 자체의 성폭력적 문화와 구조들의 고리를 깨뜨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구성해내는 한 방법이 된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만들어 그것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은 학생사회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바로 자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치권의 침탈에 대한 방어나 수세적인 대응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자치적인 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규와 같은 경우 그 강제력은 구성원의 그것에 대한 동의 수준과 위반한 사람의 자율에 의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내부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논의가 구성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확장됨으로써 내규는 그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논의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말이나 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원들의 행동과 사고 자체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되어야 한다. 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고와 행위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성폭력 모두를 근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규를 지켜서 성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의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의 징계부분으로 어떻게 가해자에게 징계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가해자가 집단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는데, 사건마다 그 해결 방법이나 사건 처리과정도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모든 경우의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성폭력인 경우

우선은 성폭력 사건 대책 위원회에서 각급 학생회에 직접 사과와 징계 실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과 자보를 게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난

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성폭력에 대한 논쟁을 확장시키고 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단지 가해자의 처벌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성폭력적인 문화와 구조 전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인식을 바꿔나가며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더욱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도 충분히 그 목적을 만족하는 데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겠다.

▶개인적 성폭력의 경우

·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미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이후이므로 그대로 사건을 공개할 수도 있겠다.

· 가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대책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후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처리의 경험이 쌓이면서 징계 내용이나 강제력에 대해서 내규의 개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이

꾸려집니다

대학 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여성배제적인 성문화에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여성의 시각에서 재구성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제안된 이후 확대 간부수련회에서 한번의 공청회와 한번의 교양학교가 진행됐다. 그 동안 새터 내규제정을 제안한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각 단위에서는 새터 내규제정운동의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고 연세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했지만 아직은 새터 내규가 충분히 모든 연세인들에게 공유되지 못한 것 같다. 지난 2월 1일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에서 준비한 교양학교에도 많은 단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각 단대와 과반 학생회, 그리고 신입생 맞이 사업을 준비하는 실무주체들에게 새터에서의 성폭력 문제와 새터 내규의 필요성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대학사회의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실물화하고 구체화했으며 성폭력의 개념부터 일상적인 우리의 대학 성문화를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 팀이 필요하다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예방과 신고가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새터 내규가 제정됨으로써 이제까지 은폐되고 음성적으로 유통되어져 왔던 대학 내의 성폭력에 대한 담론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적 상황이라고 느끼는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연세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강제력을 띠는 자치규약인 새터 내규가 이번에 연세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시행되는 것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터 내규는 제정 이후 모든 연세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각 단대나 공간별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지형과 새터 내규를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성 자치단체들이 존재했던 문과대나 사회대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반(反)성폭력 자치규약 제정운동이 이루어졌던 경향이 있지만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제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한 단대가 대부분일 것이다. 특히 매우 실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여학생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과나 한 반에 여학생의 수가 극히 적은 공대같은

상황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너무나 편하게 드러나서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는 점이 공청회나 교양학교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대학사회의 문화

2.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의 역할

* 새터 시기 성폭력 모니터링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 제안되기 이전부터도 산발적으로 대학 내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연세에서도 있어왔지만 그러한 문제제기들은 특정 단대나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또한 아직 모든 연세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새터 내규제정운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한 단대나 공간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지점들은 새터 내규가 제정된 이후에도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뿐만 아니라 각 단위에서 새터에 참여하는 모든 연세인에게 새터 내규 제정의 목적과 의의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통해서 어느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각 단대별로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을 통해서 단대별로 새터에 참여하는 단대 구성원들에게 새터 내규 제정을 알리는 작업과 함께, 성폭력적 상황이 발생해도 다양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새터 시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관련 단위 실무주체의 역할

앞에서도 누누히 강조했듯이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제정된 이후에 각 단위별로 새터 내규의 제정을 알리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은 새터 시기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때부터 새터 내규의 제정을 알리고 신고함 설치부터 각 단위별로 내규의 실행에 필요한 제반 작업들을 담당하는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 관련 단위 실무주체의 역할까지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새터 이후 성폭력에 대한 담론 모니터링

새터 반(反)성폭력 내규가 제정된 이후 이번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수련회 시기부터 적용이 되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간에 성폭력과 새터 내규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생성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단대 같은 경우에는 사건 처리 과정과 해결에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제기들과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나 신고인을 공개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형태로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새터 내규가 제정되었거나 반(反)성폭력 학생회칙이 제정된 서울대나 성균관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확인된다. 따라서 새터 내규가 원래의 의도대로 시행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새터 내규 제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위해서 새터 이후의 성폭력이나 새터 내규에 관련된 논의들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된 결과는 각 단위와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와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반(反)성폭력 운동의 방향까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